

EY한영 월간 Public Policy Newsletter

2026년 3월호

발행일 | 2026년 3월 20일

In Focus

- + 금융위거래소, 코스닥 부실기업상장폐지 개혁방안 발표..상폐대상기업 수 최대 220여 개 예상 [\(바로가기\)](#)
- + 금감원한은,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 계획 발표..5년 이내 단기 영향 분석 예고 [\(바로가기\)](#)
- + 영국,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인 '자발적 등록제' 연내 도입 [\(바로가기\)](#)
- + EU, '데이터센터 지속가능성 평가제' 도입 계획 발표 [\(바로가기\)](#)



The better the question. The better the answer. The better the world work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Contents

01	국내 업데이트	3
	1. 회계감사제도 및 기업회계기준	
	▪ 금감원, '25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발표	4
	2. 자본시장	
	▪ 금융위·거래소, 코스닥 부실기업 상장폐지 개혁방안 발표...상폐 대상 기업 수 최대 220여 개 예상	5
	▪ 금융위·금감원, '주가조작·회계부정 포상금 제도' 개선...지급상한 폐지하고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포상 방침	7
	▪ 금융위, 고배당기업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의무화...배당성향이익 배당금액 등 공시 통해 주주신뢰 강화	8
	3. ESG·지속가능성	
	▪ 금감원·한은,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 계획 발표...5년 이내 단기 영향 분석 예고	9
	▪ 금융위, 기관투자자 '경영권 영향 목적' 아닌 주주활동 명확화...'5%룰' 부담 낮춰 수탁자 책임 이행 활성화	10
	4. 기술·디지털	
	▪ 과기정통부,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향후 3년 AI 실행 전략 발표	12

02 | 해외 업데이트 14

1. ESG·지속가능성

- 영국,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인 '자발적 등록제' 연내 도입 15
- EU, '데이터센터 지속가능성 평가제' 도입 계획 발표 16
- 미국 환경보호청, 온실가스 규제 근거 된 '위해성 판단' 철회 결정...환경단체는 소송 제기 18

2. 기술·디지털

- EU, 챗GPT '초대형 플랫폼·검색엔진' 지정 추진...AI법에 더해 디지털서비스법으로도 규제 방침 19
- OECD, 책임 있는 AI를 위한 실사 지침 발표...6단계 실사 프레임워크 제시 20

03 | 주목할 간행물 21

01

국내 업데이트

금감원, '25년 외부감사 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발표

2월 26일 금융감독원이 2025년 말 기준 외부감사 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을 [발표](#)함. 주요 항목별 현황은 다음과 같음.

항목	현황
외부감사 대상 회사 감사인 지정 현황	- 외부감사 대상 중 지정회사 비율은 4.6%로서 전년(4.4%) 대비 소폭 상승함 - 전체 외감 대상 회사: 4만 2891사로, 전년(4만 2118사) 대비 773사 증가 - 감사인 지정회사: 1971사로, 전년(1859사) 대비 112사 증가
상장사 감사인 지정 현황	- 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34.9%로, 전년(35.9%) 대비 소폭 감소함 - 지정회사 수: 961사로, 전년(970사) 대비 9사 감소 - 전체 상장사 수: 2752사로, 전년(2705사) 대비 47사 증가

외부감사인 지정 비율

		(단위: 사, %, %p)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a)	'25년(b)	증감(c=b-a)
전체	지정회사(A)*	1,521	1,969	1,976	1,667	1,859	1,971	112
	전체 외감(B)	31,744	33,250	37,519	41,212	42,118	42,891	773
	지정비율(C=A/B)	4.8	5.9	5.3	4.0	4.4	4.6	0.2
상장	지정회사(A)*	1,060	1,256	1,152	994	970	961	△9
	전체 상장사(B)	2,382	2,457	2,542	2,642	2,705	2,752	47
	지정비율(C=A/B)	44.5	51.1	45.3	37.6**	35.9	34.9	△1.0

* 지정시점 기준 예) '25년에 '26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한 경우 '25년 지정회사로 간주하고 계산

<최근 6년간 외부감사인 지정 비율>

출처: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와 함께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통해 외감 대상 회사의 제도 이해도를 제고하고, 감사인 선임절차 등 주요 의무 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또한 올해 2월 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한 데 따라, 해당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본 뉴스레터 2026년 2월호 “금융위, 회계 및 감사 품질 제고 방안 발표...회계부정 지시자 최대 5년 상장사 퇴출하고 감사인 선정 시 이해충돌 차단장치도 도입” 참고)

금융위·거래소, 코스닥 부실기업 상장폐지 개혁방안 발표...상폐 대상 기업 수 최대 220여 개 예상 In Focus

2월 1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부실기업의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함.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 중에서 혁신기업 상장은 쉽게, 부실기업 퇴출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다산다사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재설계'의 후속조치로 마련됨.

배경

- '25년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총 38건으로 '23년 8건, '24년 20건 대비 대폭 증가¹했으나,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부실기업 문제가 여전히 큰 상황임.
- 지난 20년간 코스닥 시장 진입은 1353개사, 퇴출은 415개사로 상장 기업 대비 퇴출 기업 수가 적은 구조가 지속됨. 이 과정에서 시총은 8.6배 상승했으나, 지수는 1.6배 상승에 그침.
 - 같은 기간 코스피 시총은 6.7배, 지수는 3.8배 상승함.

개혁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집중관리기간 운영

한국거래소에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26.2월부터 '27.6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함.

2.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시가총액 요건상향조정 계획 조기화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신설
•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금액 상향조정 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매반기 1회로 조기화 - 당초 상향조정 계획: ('27.1월) 150→200억원, ('28.1월) 200→300억원 - 변경 후 계획: ('26.7월) 150→200억원, ('27.1월) 200→300억원	• 7월 1일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장폐지 요건 신설 - 주식 수를 줄이는 액면 병합으로 상장폐지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 미만²인 경우도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공시위반 요건 강화
• 현행: 사업연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즉시 상장폐지 • 변경: 이에 더해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인 경우에는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결정	• 벌점 기준 하향 조정 - 현행: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5점 누적 - 변경: 최근 1년간 공시벌점 10점 누적 •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 위반은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상장폐지 대상 범위에 포함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상장폐지 결정 ['21년] 22건 → ['22년] 16건 → ['23년] 8건 → ['24년] 20건 → ['25년] 38건

² 예)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4주를 1주로 병합해 액면가를 2000원(주가1200원)으로 끌어올려도 상폐 대상에 포함

3.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

작년 제도 개선을 통해 코스닥 실질심사 시 기업에게 부여 가능한 최대 개선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축소한 바 있음. 올해는 이 기간을 1년으로 추가 축소함.

위와 같은 개혁방안을 반영해 거래소가 단순 시뮬레이션한 결과, 올해 중 코스닥 상장폐지 대상 기업 수는 기존에 예상했던 50개사보다 100여 개 늘어난 150개사 내외(100~220여 개사)가 될 것으로 추산됨.

금융위와 거래소는 거래소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절차 효율화는 올해 4월 1일부터, 4대 요건 강화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임. 이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임.



금융위·금감원, '주가조작·회계부정 포상금 제도' 개선...지급상한 폐지하고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포상 방침

이르면 올해 2분기부터 불공정거래·회계부정 내부고발에 대한 포상금 지급 상한이 전면 폐지되는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 회계투명성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

2월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가조작·회계부정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함. 그간 운영되어 온 신고자 포상금 제도가 해외와 비교하면 지급한도가 낮아 신고 유인이 충분하지 않았고, 금융위·금감원이 아닌 다른 행정기관으로 신고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한계가 있었기 때문. 이에 따라 금융위는 핵심 정보를 가진 내부자의 적극적 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함.

상한없는 포상금: 내부고발에 따른 위험부담 대비 보상을 충분히 제공



-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의 지급상한을 폐지해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 제공
 - 현행 포상금 상한: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

포상금 산정방식 개편: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를 포상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산정방식¹ 간소화: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일정 비율(최대 30%)'을 포상금 지급의 기준금액으로 하고,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 포상금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개선
 - 부당이득·과징금이 적더라도 불공정거래 500만원 이상, 회계부정 3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경우 등에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정 수준 지급
- **재원 확보 및 신속한 지급을 위한 기금 조성:** 불공정거래·회계부정 행위자로부터 징수한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검토

어디에 신고하든 포상금 지급



-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아닌 다른 행정기관에서 이첩 또는 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보는 근거 마련

금융위는 포상금 제도 개편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외부감사법 시행령, 불공정거래 포상규정, 회계부정 포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월 26일부터 4월 7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힘.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2분기 내에 시행될 예정임.

¹ 현행 규정상 산정방식이 복잡하여 신고자 입장에서 포상금의 규모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고, 포상금 지급액이 등급에 따라 구간별로 산정되어 범죄수익을 환수하더라도 이를 포상금에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했음.

금융위, 고배당기업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의무화...배당성향이익 배당금액 등 공시 통해 주주신뢰 강화

앞으로 배당을 많이 함으로써 투자자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기업은 이익배당 결의 다음 날까지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내용을 포함해 '밸류업 공시'를 해야 함.

2월 24일 금융위원회는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 기업(이하 '고배당기업')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요구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함.

배경

- 기존에는 주식 투자로 발생한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다음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14% 세율로 분리과세 되고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었음.
- 국세청은 종합과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고배당기업 투자에 대한 과세 특례를 도입함. 올해 1월 1일부터 고배당기업 투자자들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분리과세를 신청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됨.

이번 시행령 개정의 의의 중 하나는 고배당기업이 특례 요건을 충족하고 이를 공시할 경우 투자자의 세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배당을 통해 주주환원에 힘써 온 우수한 기업들도 자금 조달과 재투자가 원활해진다는 데 있음. 이를 통해 기업·투자자·시장이 동반 성장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고배당기업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방법

- **공시 기한:** 매 사업연도 결산 종료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 **공시 채널:**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
- **공시 내용:**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보여주는 실적을 포함하여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 실적 공시 항목 예시: 직전 사업연도 발생 배당소득, '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발생 배당소득,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전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상장기업이 거래소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및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개별 특성에 따라 어떤 항목을 포함할지 결정
 - 첫 해 약식 공시: 올해는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 자기자본이익률(ROE)¹·배당성향 목표, 자본적지출(CAPEX)² 목표와 같은 핵심 내용만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약식 공시도 허용

거래소는 공시 지원을 위해 공시서식과 기재상 주의사항을 개정하고 약식공시 사례를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반영할 계획임. 또한 3월 초에 두 차례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3월 말 상장기업들의 주주총회 일정을 고려해 고배당기업을 대상으로 한달 간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지원해 나갈 방침임.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고배당기업들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게 되어, 기업들이 해당 계획을 통해 주주 및 시장참여자와 적극 소통하는 과정에서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문화가 시장에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¹ Return on Equity: 투입한 자기자본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당기순이익을 자본(순자산)으로 나누어 구함.

² Capital Expenditure: 기업이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기존 자산의 내용연수 연장 또는 가치 증가를 위하여 지출하는 장기 투자성 비용

금감원·한은,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 계획 발표...5년 이내 단기 영향 분석 예고 In Focus

3월 10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이 기상청과 협력하여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액 등 경제변수를 고려한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고 이를 금융리스크 분석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이번에는 향후 5년 이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기후변화정책 영향에 집중할 계획임.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란?

- 이상기후 및 저탄소 전환의 영향을 시나리오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아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향을 계량화하여 기후리스크¹를 측정함

기후변화 대응² 비용 발생
(이상기후 현상 및 저탄소 전환)

기업 수익성 악화

금융회사 여신 손실

- 국내 금융권의 기후리스크 관련 인식이 확대되면서 '23.2월에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범 실시함. (본 뉴스레터 2023년 5월호 “금융위, ‘ESG 금융 추진단’ 제 2 차 회의 개최” 참고) 이후 '24년과 '25년에 걸쳐 금감원과 한은은 기상청과 공동으로 2050 탄소중립 경로 등 30년 이상 장기적인 영향을 다룬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바 있음. (본 뉴스레터 2025년 4월호 “금감원·한은,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및 향후 기후리스크 감도방향 발표” 참고)

이번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는 크게 다음과 같이 실시될 예정임.

'26년 상반기: 금감원·한은·기상청이 기후 시나리오 개발

- 5년 내 가뭄 등 이상기후 심화 및 탄소 감축 정책 등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액, GDP 및 물가 등 경제·금융변수 시나리오를 개발하여 금융회사에 배포
- 금융회사는 시나리오상 지역별 자연재해 피해액, 기업 탄소배출 정보 등을 활용하여 대출 손실 및 보험 손해율 등을 측정

'26년 하반기: 금감원과 한은이 이 시나리오하에서 금융회사에 미치는 영향 측정

- 결과를 금융회사 결과와 비교·분석하여 금융사 기후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할 예정

금감원과 한은은 공동 기후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금융안정을 위한 기후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임. 또한 금융회사의 녹색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저탄소 전환자금 공급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기후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¹ 기후리스크는 크게 전환 리스크 및 물리적 리스크로 구분 가능하며, 이는 금융회사의 신용·시장·운영·보험 리스크 등 다양한 금융 리스크 형태로 나타날 수 있음.

² 기후변화 대응은 이상기후로 인한 영향, 저탄소 전환 등을 의미하는데, 이상기후 영향은 가뭄·홍수 등 자연재해 피해액 및 극한기후의 성장·물가 영향 등, 저탄소 전환은 전환비용의 실물 경제 파급 영향 등을 측정함.

금융위, 기관투자자 '경영권 영향 목적' 아닌 주주활동 명확화... '5%룰' 부담 낮춰 수탁자 책임 이행 활성화

금융위원회가 기관투자자들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명 '5%룰'로도 불리는 '대량보유 등의 보고' 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주활동 범위에 대한 법령해석을 일부 [제공](#)함. 이번 해석에는 다양한 주주활동들이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됨.

대량보유보고제도(5%룰)란?

-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식 등을 대량 보유한 경우 ▲보유주식이 5% 이상이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경되거나 보유목적이 변동되는 경우, 그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유상황,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함.
- 이때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줄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시기한 완화, 보고절차 간소화 등의 특례가 적용됨. 그러나 그간 기관투자자들은 특정 주주활동의 경영권 영향 목적 해당 여부에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며 특례 적용 주주활동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제기해 옴.
 - 특히 거액을 운용하는 일부 공적연기금에게 매우 민감한 이슈로, 지분변동 내역을 5일 이내에 상세히 공시할 경우 매매전략과 투자패턴이 공개돼 추종매매로 수익률 하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특정한 주주활동이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보고 의무는 아래와 같이 달라지는데, 특히 공적연기금의 경우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는 경우 5일 약식 보고를 해야 하지만 그러한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월별 또는 분기보고 약식 형태로 보고 의무가 완화됨.

보유목적		경영권 영향 목적 있음	경영권 영향 목적 없음	
			일반투자	단순투자
주주활동		임원 선·해임 등에 대한 주주제안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적극적인 유형의 주주활동	단독주주권만 행사 · 예: 의결권, 신주인수권
보고 의무	일반투자자	· 5일 상세	· 10일(신규: 5일), 약식	· 월별 약식(신규: 5일)
	공적연기금	· 5일 약식	· 월별 약식	· 분기보고 약식

<경영권 영향 목적에 따른 보고 의무>

출처: 금융위원회

이번 법령해석을 통해 기관투자자가 수탁자 책임을 보다 원활히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법령해석에 제시된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구체적인 주주활동의 유형은 다음과 같음.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다만, 이러한 활동들이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과 관련된 정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주주활동	주요 내용
주주총회 문화 개선	- 주주총회 문화 개선과 관련된 활동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님을 명확화함. 예)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위해 주총 안건에 대한 조기 공시 요구, 구체적인 내용 설명 요청 등
자기주식	- 자기주식 소각을 요구하거나 주총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의 이행을 요청하는 것 또한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최근 상법 3차 개정안 통과로 모든 주식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이내에 소각할 의무가 부여된 바 있음. (본 뉴스레터 2026년 2월호 “상법 3차 개정안 국회 통과...자사주 소각 1년 이내 의무화” 참고)
배당	-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고,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계획 연 1회 이상 통지 등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배당 관련 핵심지표 준수 요구 등도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님. ‘20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배당 관련 사항은 경영권 영향 목적 관련 항목에서 제외된 바 있음.
임원보수	- 임원보수(한도)와 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적절한 임원보수 정책이 설계될 수 있도록 회사에 설명 및 대화를 요청하는 것, 임원보수 세부내역산정기준 정책에 관한 설명 및 변경을 요구하는 것 등 임원보수 관련 주주활동은 경영권 영향 목적에 해당하지 않음. - 임원보수 공시제도 개선으로 총주주수익률·영업이익률과 임원 보수가 함께 공시될 예정이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¹ 등과 관련된 정보공개도 강화됨. (‘26.5월 시행) (본 뉴스레터 2026년 1월호 “금융당국, 기업공시 개선안 발표...영문공시 확대하고 주주총회·임원보수공시도 강화” 참고)

금융위는 상반기 중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하는 등 기관투자자의 활발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2016년 이후 개정되지 않았던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상반기 중 추진할 계획임.

¹ restricted stock units: 일정 성과를 달성한 임직원에게 회사가 현금 대신 양도 시점을 제한해 지급하는 주식으로 스톡옵션과 달리 주가가 떨어져도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양도 가능 시점을 장기로 설정하기 때문에 임원의 책임 경영과 장기근속 등을 이끌어 낼 수 있음.

과기정통부,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향후 3년 AI 실행 전략 발표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가 행동계획을 포함한 AI 추진 전략의 방향을 제시함.

2월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최됐다고 [발표](#)함. 위원회는 지난해 9월 출범해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추진 방향을 의결한 바 있음. (본 뉴스레터 2025년 9월호 “과기정통부,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안내...AI 기본법 시행령 연내 제정 방침” 참고)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추진 방향을 토대로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행동계획 최종 확정을 비롯해 총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함.

안건1: 대한민국 AI 행동계획

- 앞으로 3년 동안 범정부 차원에서 AI 정책 추진의 기준이 될 종합 실행 전략
- 구성: 99개 실행 과제와 326개 정책 권고
- 주요 과제
 -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의 AI 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착한 해커(화이트해커)¹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상시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
 - 민간·공공의 AI·데이터 정책 간 연계·협업을 위한 관리 체제(거버넌스) 정립 방향 마련 등

안건2: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 방향

-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 (‘26.2.11 시행)
- 국가정보 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² 2030년까지 폐쇄
- 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정부의 AI 기반 시설(인프라) 총괄 전담 조직 신설 등

안건3: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

-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국내 정보보안 인식 체계(패러다임)를 사전 예방으로 전환
- 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로 찾아 신고하고, 피신고 기관은 취약점을 조치하며 그 이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해킹 등 보안 사고 예방
- 3단계 로드맵: ‘26년까지 민간과 공공분야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27년까지 참여 확대, 그 이후 법제화 등 3단계 로드맵 추진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컴퓨터와 온라인의 보안 취약점을 연구해 해킹을 방어하는 전문가

² 2025년 9월 정부의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국정자원 대전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해 정부 부처 홈페이지 등 700여개의 시스템이 마비된 후 복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함

안건4: K-문샷¹ 추진 전략(안)

- AI와 과학기술을 융합해 국가 핵심 임무를 해결하고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하는 범국가 사업으로, 과기정통부는 3월 11일 33개 협력기업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함.
- **전략1:** AI를 활용해 국가 과학기술 혁신 가속화
 - 국가 연구데이터, 그래픽처리장치(GPU), AI 모델, 자율실험실 등 AI를 활용한 과학기술 핵심 자원 통합
 - 산·학·연 삼각 협력체계 구축
- **전략2:** 국가적 임무 해결
 - 8대 분야² 12대 국가적 임무를 '35년까지 과학기술과 AI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임무별 책임과 권한이 있는 총괄 책임자 임명, '35년까지 구체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

이 외에도 지난 1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정 위원회로 전환된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강화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전담반(태스크포스) 등 내부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의결이 진행됨.

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률 전담반을 발족할 계획임.

¹ '달 탐사선의 발사'를 뜻하지만 종종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의미함

² 첨단 생명과학(첨단바이오), 미래에너지,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 우주, 소재, 인공지능(AI) 과학자, 반도체, 양자

02

해외 업데이트

영국,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인 '자발적 등록제' 연내 도입

In Focus

1월 30일 영국 정부가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받고 있는 제3자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기관들이 고품질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발적 등록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함.

배경

- **지속가능성 정보 인증:** 2025년 11월 영국은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 기준에 기반한 영국 지속가능성 인증기준 ISSA (UK) 5000을 [확정](#)해 자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
 - 이에 앞서 2025년 6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는 자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독립적인 제3자의 인증 업무를 감독하는 안에 관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그 결론이 이번에 공개된 것.
- **지속가능성 정보 공시:** 한편, 올해 2월 말에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기준에 기반한 영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UK S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와 S2 '기후 관련 공시'가 [확정](#)됨.
 - 영국은 이미 2022년부터 상장사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개 전담협의체(TCFD) 권고안에 기반한 기후 공시를 의무화해 왔음. 다만 UK SRS 기반 공시는 아직 법으로 의무화되지 않았으며, 자발적으로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는 기업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양한 기준을 병행하여 사용 중.

인증인 감독은 기존의 재무보고 감독기관인 재무보고위원회(FRC)가 맡을 예정으로, 자발적 등록제를 포함해 지속가능성 인증업무의 품질 확보 방향성에 관해 청취한 의견을 종합해 영국 정부가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음.

감독 필요성

자율 규제로 운영되는 현재의 인증시장을 신뢰하는지?

+ 정부 결론

현재는 인증 품질을 일관되게 신뢰하기 어렵다는 다수 의견에 따라 감독제도 도입

감독 방식

인증인 스스로 FRC에 등록해 자발적으로 감독받는 제도 vs. 등록 전면 의무화 (법정 규제)

+ 정부 결론

우선 자발적 등록제로 운영

인증인 등록자격

회계법인으로 한정 vs. 비회계법인도 인증기관으로 등록 허용

+ 정부 결론

회계법인과 비회계법인 모두 등록을 허용하되, FRC가 역량, 인력의 전문성과 지식, 기타 자격요건 등 세부 기준 수립 예정 (단, 인증인의 규모, 역할, 리스크 수준 등에 맞추어 요건의 적용 방식 등을 비례적으로 조정할 방침)

등록제 설계 및 운영

등록 제도 개발 및 운영 시 FRC가 고려해야 할 주요 원칙

+ 다수 의견¹

- ① 명확하고 엄격한 자격요건: 모든 규모와 유형의 인증인에게 공통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엄격한 기준 필요 (전문성·역량, 독립성·윤리기준, 품질관리시스템 등)
- ② 비례성과 유연성: 초기에는 시장의 발전 수준과 역량을 고려해 차등적·단계적으로 요건을 적용하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 성숙도에 맞춰 제도를 조정하고 고도화
- ③ 제도의 투명성: 등록제 목적, 적용 범위, 등록 요건 등을 명확히 공개하고, 등록·미등록 판단 기준·이유를 투명하게 설명
- ④ 상호운용성: EU 등 타 관할 제도와의 정합성을 고려, 영국 인증인이 해외에서도 인증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연계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등록제 세부 내용은 FRC가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입장은 없으며, 의견수렴 결과가 FRC에 전달되었다고 밝힘.

한편,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¹은 현재 상장사 등이 기후 공시 의무를 이행할 때 사용 중인 TCFD 권고안을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는 UK SRS 기준으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3월 20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함.

이처럼 UK SRS 기반 공시 체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기에 앞서, 영국 정부는 인증시장의 신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 자발적 인증인 등록 체계는 올해 중순까지 마련될 예정으로, FRC가 적격 인증인을 대상으로 한 임시 공개 등록부를 관리할 방침임.

영국 정부는 향후 의회 일정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입법화하여 등록 및 감독 제도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입법화 이후에도 등록은 자발적 제도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힘.

EU, '데이터센터 지속가능성 평가제' 도입 계획 발표

In Focus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인공지능(AI), 스트리밍 서비스 등의 사용량이 급증하며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가동에 따른 막대한 에너지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EU가 유럽 내 데이터센터의 환경등급제도를 도입하고 최소한의 에너지 성능 기준을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배경

- 현재 전 세계 연간 전력소비량 중 약 1.5%(415TWh²)를 데이터센터가 차지하고 있음.
-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전체 전력소비량은 2030년까지 2배 이상, AI에 최적화된 데이터센터의 경우에는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는 동일한 연산 패턴이 수십억 회 이상의 계산 단위로 병렬 반복됨. 따라서 AI 데이터센터는 순서대로 작업을 처리하는 직렬 방식의 CPU(중앙처리장치)가 아닌 병렬 방식의 GPU(그래픽처리장치)와 같은 가속기를 대규모로 사용하며, 그 '빠름'의 대가로 전력을 폭발적으로 소비함.

EU는 역내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와 환경 및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센터 운영자의 투명성 강화가 핵심이라고 밝히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도입함.

에너지 성능 모니터링 및 공시(시행 중)

- '23년 10월 발효된 '에너지효율법'(Energy Efficiency Directive)'에 따라 데이터센터 에너지 성능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의무는 이미 도입됨.
 - 각 회원국은 IT 장비의 전력 수요가 500kW 이상인 데이터센터 소유자·운영자가 에너지 성능 데이터를 매년 EU 데이터베이스에 제출하도록 요구해야 함.³
- '24년 6월 발효된 하위법령으로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핵심성과지표(예: 에너지 총소비량, 물 사용량, 재생에너지 비중)를 지정하고 데이터센터 환경등급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⁴

» 다음 페이지에 계속

¹ 영국 상장 규정(Listing Rules)을 운영함.

² 1 테라와트시(Terawatt-Hours, TWh)는 1조 와트시이며, 이는 약 25만 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량에 해당함. 전 세계 데이터센터들은 1년에 그 415배를 쓰고 있는 것.

³ 다만 법의 형식이 지침(Directive)이므로, 의무사항의 국내법 전환완료 또는 지연 여부는 회원국마다 상이함. 전환 기한은 '25년 10월이었음.

⁴ 하위법령은 국내법 전환 절차 없이 모든 회원국에 직접 구속력을 가지는 규정(Regulation)으로 제정됨.

데이터센터 친환경성에 대한 유럽 공통의 평가체계 (준비 중)

- EU 집행위원회는 ▲데이터센터의 에너지·지속가능성 등급평가체계(rating scheme) 기반 구축 ▲최소 성능 기준 수립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는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성 법안 패키지'를 준비 중임.
- 이 패키지는 오는 4월 '에너지 섹터 디지털화 및 AI 활용을 위한 전략적 로드맵' 및 '클라우드 및 AI 개발 법'과 함께 채택될 예정임.

EU 집행위는 평가체계 수립을 위해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성능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으며, EY 등이 작성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등급평가체계의 기본 개념과 현재 제안된 평가등급 라벨 등을 확인할 수 있음.



미국 환경보호청, 온실가스 규제 근거 된 '위해성 판단' 철회 결정... 환경단체는 소송 제기

2월 12일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2009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근거가 된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¹)'을 최종 철회한다는 결정을 발표함.

위해성 판단은 온실가스가 공중 보건과 환경에 위협이 된다는 과학적 판단이자,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따라 지금까지 연방 차원의 기후 규제를 가능하게 해온 법적 근거였음. EPA의 이번 철회 조치로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이 축소되고 연방 차원의 기후 정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방 및 주 차원에서 사법·입법 영역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법적·정책적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AP 통신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12개 이상의 환경 및 공중보건 단체로 구성된 연합체가 이미 EP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¹ 행정기관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특정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행정적 판단으로, 강한 법적 구속력을 가짐.

EU, 챗GPT ‘초대형 플랫폼·검색엔진’ 지정 추진...AI법에 더해 디지털서비스법으로도 규제 방침

2월 2일 EU 집행위원회가 챗GPT를 디지털서비스법(DSA)¹하의 가장 엄격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VLOP) 또는 초대형 온라인 검색엔진(VLOSE)²으로 지정³하기 위한 절차를 1분기 내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

배경

- 2022년 11월 디지털서비스법 발효 이후, EU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플랫폼/검색엔진 규모별 차등 규제를 도입해 왔음. 이들의 사회적 영향력 증가에 따라 별도 감독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 (본 뉴스레터 2025년 1월호 “EU, 디지털서비스법에 따른 초대형 플랫폼의 위험평가감사 보고서 최초 공개 안내” 참고)
- 2025년 10월 OpenAI가 챗GPT의 온라인 검색 기능을 사용하는 EU 내 월평균 활성 이용자(AMAR)³가 1억 2040만 명을 기록했다고 [보고](#)하면서 VLOP/VLOSE 기준인 4500만 명을 크게 상회하자, EU는 기존보다 빠른 일정으로 챗GPT의 VLOP/VLOSE 지정 절차를 추진하게 됨.

디지털서비스법이 규정하는 VLOP 및 VLOSE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음.

VLOP 또는 VLOSE 지정 시 4개월 내 이행 필요 사항

- **서비스구조로 인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 평가:** 서비스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허위정보 확산, 기본권 침해 등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위험을 정기적으로 식별·평가
- **DSA 컴플라이언스 조직 설치:** 법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조직을 설치하고, 책임자가 경영진에 직접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
-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외부 감사:** 서비스 운영 및 리스크 관리 체계 등 DSA 의무 준수 전반에 대해 최소 연 1회 독립적인 제3자로부터 감사를 받고, 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 현황 보고
- **EU 집행위의 직접 감독:** EU 집행위원회의 직접 감독 대상이 되며,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미이행 시 제재를 받음
- **규제기관 요청 시 데이터 접근 허용:** EU 감독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련 데이터에 접근권을 제공하고, 감독기관이 자격을 부여한 연구자⁴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데이터 접근을 해당 목적에 한해 허용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챗GPT는 모든 온라인 플랫폼과 검색엔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주의의무(due diligence obligations)⁵를 준수해야 함. 단, VLOP/VLOSE로 지정된 이후 12개월 연속으로 이용자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이 해제됨.

¹ EU 내 모든 온라인 플랫폼(소셜미디어, 마켓플레이스 등)이 불법 콘텐츠·유해 알고리즘·온라인 광고·사용자 보호 문제를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만든 온라인 안전·책임 규제법

² 챗GPT를 검색엔진으로 볼 것인지는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검토 중임. 웹 정보를 검색해 제공하는 기능이 있어 VLOSE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으며, 사용자 입력에 기반하여 콘텐츠를 생성 및 유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VLOP로 간주될 여지도 있음.

³ Average Monthly Active Recipients: DSA [제24조](#)에 따라 EU 내 서비스 이용자의 월평균 활성 수를 산정한 지표

⁴ DSA [제40조](#)에 따라 감독기관이 일정 요건(연구기관 소속, 독립성, 공익 목적, 데이터 보호 능력 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부여하는 연구자 지위를 의미

⁵ 온라인 플랫폼/검색엔진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신고·조치, 투명성, 이용자 보호 등 기본 의무

OECD, 책임 있는 AI를 위한 실사 지침 발표...6단계 실사 프레임워크 제시

인공지능(AI)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증대되는 가운데, 2월 1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책임 있는 AI를 위한 실사(Due Diligence) 지침'을 [발표](#)함.

배경

- OECD는 1976년부터 '다국적기업(MNE)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다국적 기업이 자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책임경영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으며 2023년에 [개정](#)됨.
 - 이러한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실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OECD는 2018년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 지침'을 제정하여 [발표](#)함.
- 또한 2019년에는 혁신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인권과 민주적 가치를 존중하는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AI 원칙'을 채택하고 2024년에 [개정](#)한 바 있음.
- 이번 지침 또한 기업이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AI 원칙'을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기업이 AI를 개발 및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함.

이번 지침은 기업들이 AI 가치사슬에서 혁신, 투자, 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정적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

크게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의 개념과 AI 관련 주요 고려사항 ▲위험 식별 및 대응을 위한 실사 프레임워크와 실무 사례 등 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실사 프레임워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짐.

1단계	• 기업책임경영을 기업의 정책과 관리 시스템에 통합
2단계	• 실질적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식별 및 평가
3단계	• 부정적 영향 중단·예방·완화
4단계	• 실사 활동의 이행 및 성과 추적
5단계	• 부정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
6단계	• 적절한 보완 조치를 마련하거나, 권고 받은 보완 조치 이행에 협조

OECD는 기업이 지침에 따라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의 권고사항을 이행할 경우, 기업경영책임을 위한 핵심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이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3월 13일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하여 '인공지능 윤리 원칙' 제정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4월 중순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6월까지 윤리 원칙을 제정할 방침임.

03

주목할 간행물



EY: Why shared intelligence will redefine talent



EY가 [메가트렌드 시리즈](#) 중 하나로 인간과 기계가 공존하는 '공유지능(shared intelligence)'의 시대에 '인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함. 메가트렌드 시리즈는 EY의 글로벌 캠페인으로, 변화의 예측불가성(Nonlinear)¹, 가속성(Accelerated), 변동성(Volatile), 상호연결성(Inter-connected)을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관찰되는 핵심적인 변화와 리더들이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함.

이번 보고서에서는 인간과 인공지능(AI)이 상호 적응하고 공동 학습하며 함께 진화하는 공유지능 시대의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인원수가 아닌 역량(capability)을 경쟁력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함. 아울러 새로운 역량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습을 통해 인간과 AI의 잠재력이 함께 진화하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함.

¹ A와 B의 관계가 선형적(linear) 비례 관계로 일정하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상관관계의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비선형적 특성을 의미

담당자 안내

EY한영 Public Policy팀

이동근 부문대표 (파트너)

EY한영 품질위험관리부문대표, Public Policy 리더

dongguen.lee@kr.ey.com

Public Policy 뉴스레터 편집팀: 김양희 팀장, 권혜숙 차장, 강태은 과장

EY한영 ESG Impact Hub

박재흠 파트너

EY한영 ESG Impact Hub 리더, 감사부문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경영 서비스 리더

jaeheum.park@kr.ey.com

뉴스레터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

품질관리실 회계기준 김동길 파트너 품질관리실 감사기준 및 제도 정연웅 파트너

I 제작 EY한영 Public Policy 팀 (ey.pp.team@kr.ey.com)

I 뉴스레터 구독 신청 담당 EY 파트너 문의

EY |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EY is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by creating new value for clients, people, society and the planet, while building trust in capital markets.

Enabled by data, AI and advanced technology, EY teams help clients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and develop answers for the most pressing issues of today and tomorrow.

EY teams work across a full spectrum of services in assurance, consulting, tax, strategy and transactions. Fueled by sector insights, a globally connected, multi-disciplinary network and diverse ecosystem partners, EY teams can provide service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All in to shape the future with confidence.

EY refers to the global organization, and may refer to one or more, of the member firms of Ernst & Young Global Limited, each of which is a separate legal entity. Ernst & Young Global Limited, a UK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Information about how EY collects and uses personal data and a description of the rights individuals have under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re available via ey.com/privacy. EY member firms do not practice law where prohibited by local law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organization, please visit ey.com.

© 2026 EY Han Young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has been prepar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intended to be relied upon as accounting, tax, legal or other professional advice. Please refer to your advisors for specific advice.

ey.com/kr

